

2. 직무발명 및 기술이전규정 신규대비표

현행	개정(안)	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3.-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조(용어의 정의) 3.-가. 제2호에 <u>의한</u> ...	문구 단순화(이하 동일)
제4조(권리의 승계) ① 구성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산학협력단이 <u>아</u> 를 가진다.	제4조(권리의 승계) ① 구성원이 발명한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는 <u>산학협력단이 가진다</u> .	단순 문구수정(목적어 중복)
제8조(자유발명의 양도) ① 자유발명자는 제2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제8조(자유발명의 양도) ① 자유발명자는 제2조 제3호 제가목에 해당하는...	해당 조항 합치
제10조(출원 등)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한다.	제10조(출원 등) ① 산학협력단이 발명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한 직무발명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u>특허 등을</u> 출원한다.	문구 명확화(목적어 명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특허의 경우...(이하 생략)	② 해외특허의 경우...(이하 현행유지)	문구 단순화
③ 국가인력양성사업(BK사업 등)에 의한 결과물의 발명신고서의 경우 그 해당 사업의 규정에 따라 출원을 하며, 사업이 종료되었을 시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1.)	③ 국가인력양성사업(BK사업 등)에 의한 발명 또는 산업체(POSCO포함) 과제에 의한 발명은 해당 사업 규정 또는 협약에 따라 특허 등을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사업 또는 과제 종료 시에는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	유사 조항 통합 및 문구 명확화
④ 산업체(POSCO과제 포함) 과제에 의한 결과물인 발명신고의 경우 해당 과제의 협약에 따라 출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출원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1.1.)	④ (삭제)	
⑥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에 관하여...	문구 명확화
제11조(비용부담) ①-1.-다. 등록 후 전문기관 평가 등급이 S, A인 경우, 5년 까지 대학이 권리유지 비용을 부담하며...(이하 생략)	제11조(비용부담) ①-1.-다. 등록 후 전문기관 평가 등급이 S, A인 경우, 5년 까지 대학이 <u>유지비용</u> 을 부담하며...(이하 현행유지)	규정 내 용어 통일
제11조 (비용부담) ①-3. 산업체 및 POSCO 과제의 경우 사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부담이 있을 경우 심사 후 결정을 한다. 이 경우 <u>대학의 출원</u> 규정을 따른다.	제11조 (비용부담) ①-3. 산업체 및 POSCO 과제의 경우 사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의 부담이 있을 경우 심사 후 결정을 한다. 이 경우 대학의 규정 을 따른다.	규정 내 용어 통일
(신설)	제12조(기술이전 업무의 위탁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단의 기술이전 계약 업무를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술지주회사와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전담부서는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업무의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로의 위탁 운영(2016.3.1일부) 사항 반영
제13조(기술이전 대상 업체 선정) ① 기술이전 대상 업체는 발명자 등의 협조를 통하여 <u>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전담부서에서</u> 결정한다.	제14조(기술이전 대상 업체 선정) ① 기술이전 대상 업체는 발명자 등의 <u>협조를 통하여 결정한다</u> .	기술이전업무 위탁에 따라 불필요 문구 삭제 (제12조에 따라 시행)
제14조(기술이전 협상)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은 <u>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전담부서</u>	제15조(기술이전 협상)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은 필요시 외부 협상 전문기관에	기술이전업무 위탁에 따라 불필요

현행	개정(안)	사유
에서 수행하되, 필요시 외부 협상 전문기관에 기술이전 협상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기술이전 협상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문구 삭제 (제12조에 따라 시행)
제15조(기술이전 희망업체 요청자료)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전담부서는 기술도입 희망 업체에 다음의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기술이전 희망업체 요청자료) 기술이전 추진 시에는 기술이전 희망 업체에 다음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문구 현행화 (의무사항을 선택사항으로 변경)
제16조(공동소유 기술의 처리)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이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이하 생략)	제17조(공동소유 기술의 처리)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을 외부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경우...(현행유지)	단순 문구수정(문법)
제22조(기술료의 처리)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기술료 보상금을 연구비로 재투자하겠다는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삭제)	기술료 배분 기준 변경 사항 반영(기술사업화팀-195, 기술지주회사와 기술이전업무 위탁 계획)
<p>제23조(발명자 보상) 대학 보유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허여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입 중에서 제24조의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공제한 후 각 호에 의거하여 배분한다.</p> <p>1. 제11조 제1항에 의거 특허 출원, 등록, 유지비용을 대학에서 부담한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료 수입금으로 발명자 40%, 소속부서 1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학수입으로 처리한다.</p> <p>2. 제 11조 제4항에 의거 특허권리 유지비용을 대학에서 부담한 경우 특허유지비용을 선공제한 후 기술료 수입금으로 발명자 40%, 소속부서 1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학수입으로 처리 한다.</p> <p>3. 소속부서는 발명자가 정할 수 있으며 소속부서를 정하지 않는 경우는 발명자 보상으로 지급한다.</p> <p>4. 대학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로 권리 양도한 기술에 대해서는 자회사가 사업을 착수하여 수입이 발생할 때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준에 의하여 보상한다.</p> <p>5. 정부과제에 의한 특허 및 Know-How의 기술이전료의 보상처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연구수행부서의 연구계획서는 대학의 자체연구개발계획서에 준하며 산학협력팀의 별도 지침에 따른다.</p> <p>6. 기술이전 수익금을 주식으로 받을 경우, 그 보상시기는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배분하도록 한다.</p>	<p>제24조(발명자 보상) ① 대학 보유 지식재산권의 양도 및 허여로 기술료가 발생하는 경우 그 수입에 대한 배분 기준은 산학협력단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p> <p>1. 삭제</p> <p>2. 삭제</p> <p>3. 삭제</p> <p>4. (제3항으로 이전)</p> <p>5. 삭제</p> <p>6. (제2항으로 이전)</p>	<p>- 대내외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문구수정 (기술료 배분 관련 정부기준 수시변경, 기술이전업무 위탁 등)</p> <p>- 기술료 배분 기준 변경 사항 반영(기술사업화팀-195, 기술지주회사와 기술이전업무 위탁 계획)</p>
	② 기술이전 수익금을 주식으로 받을 경우, 그 보상시기는 주식을 매도하는 시점에 배분하도록 한다.	

현행	개정(안)	사유
	<p>③ 대학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로 권리 양도한 기술에 대해서는 자회사가 사업을 착수하여 수입이 <u>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u></p>	
<p><u>제24조(기술이전 관련비용 공제) ① 대학 보유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기술 이전관련 비용은 징수한 기술료에서 각 호의 비용을 선공제한 후 제23조의 발명자 보상을 실시한다.</u></p> <p><u>1. 기술가치 평가 용역비용</u></p> <p><u>2. 기술마케팅 소요비용</u></p> <p><u>3. 기술이전 협상 용역비용</u></p> <p><u>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한 기술이전기여자 보상금 5%</u></p> <p><u>② 제1항 제4호의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은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전담부서 자금으로 적립한 후 매 회계연도 초 전년도 기술이전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u></p>	<p>(삭제)</p>	<p>기술료 배분 기준 변경 사항 반영</p>